

# 2022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	2022.12.22.(목)
대학평의원정수	12명
대학평의원재적	11명

## I.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현황

회의일시	2022.12.29.(목), 12:30~13:30	장 소	외부
참석의원(9)	권세혁, 정기철, 정성진, 김인섭, 이종인, 조광희, 박효균, 서대원, 백운섭		
불참의원(2)	김도연, 정희현		
간 사	최재웅		
입안부서 배석자(2)	정규태(교무처장), 이준재(기획조정처장)		
기 도	권세혁		

- 의장이 회원 점명을 명하니 서기가 당일 출석자는 9명임을 의장에게 알렸고, 의장이 성수여부를 확인하고 개회여부를 가결하여 한남대학교 2022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 II. 안건사항

연번	안 건 명	입안부서
1	한남대학교 학칙(제1조)	교무처 학사관리팀
2	한남대학교 학칙(제8조)	교무처 학사관리팀
3	한남대학교 학칙(제65조,66조)	교무처 교무팀

간서명란

기수, 정기철, 김인섭, 이종인, 조광희, 박효균, 서대원, 백운섭

2022.12.29. (목)

한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2022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III. 안건보고 및 토의

안건 1. 「한남대학교 학칙(제 1조) 개정 안건」을 정규태 교무처장이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 가. 개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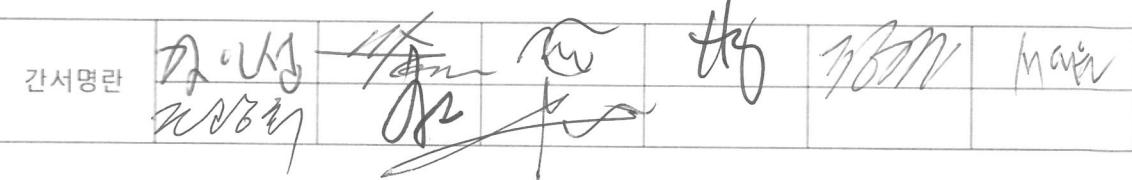
- 1)『H-BRIDGE 한남』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대외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등) 및 재정지원사업(국책사업)의 사업목적과 발전계획과의 정합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념 - 교육 목적 - 교육목표 - 인재상 - 핵심역량에 대한 재수립
- 2) 제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

#### 나. 주요 내용

- 1) 검토사항 : [H-BRIDGE 한남 비전]『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교육 만족 1위 대학』의 정의를 중장기발전계획의 중·장기 비전으로서 개념 명확화
- 2) 비전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명시된 분리된 개념으로서 한남대학교 교육목적과 목표는 학칙에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함
- 3) 한남대학교 현장 규정에는 교육목적을 명시(개정 예정)하되, 한남대학교 학칙은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명시하여, 각 규정의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함

#### ○ 권세혁 의장 입안부서 교무처 정규태 처장 설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다.

- 정성진 의원 대학 평가가 있을 때마다 학칙이 개정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럴 것인지 질의하다.
- 정규태 처장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분리를 하였고, 목적과 목표에 따른 인재상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할 거 같다고 답변하다.
- 권세혁 의장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교의 인재상 중 선도적 세계인은 다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인재상으로 수정해보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다.
- 정규태 처장 목적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답변하다.



안건 2. 「한남대학교 학칙(제8조) 개정 안건」을 정규태 교무처장이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가. 개정사유

- 1)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 혼란 방지를 위한 세부 사항 추가 및 명확한 표현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자 지원자격을 편입학 모집요강에 명시하여 전형을 운영해왔으나, 2023학년도 교육부 편입학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내용이 학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입학관리팀)
- 3) 교육부 편입학 지원자격 준수 및 편입 자원 확대(학년 수료기준 일부 조정)
- 4) 융합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학위증서(국문, 영문) 양식 조정

나. 주요 내용

- 1) 학년을 학년도로 수정
- 2)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3) 편입학: 정원 내 편입학 규정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 교육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정
- 4) 국문학위증과 영문학위증 개정

○ 권세혁 의장 입안부서 교무처 정규태 처장 설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다.

- 권세혁 의장 학위증 다전공 표시에서 "다"를 빼는 것이 어떨지 질의하다.
- 정규태 처장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하다.
- 정성진 의원 공과대학 학위증에 공학인증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문의하다.
- 정규태 처장 검토 및 확인을 하겠다고 답하다.

안건 3. 「한남대학교 학칙(제65조,66조) 개정 안건」을 정규태 교무처장이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가. 개정사유

1) 교수회 필요성

: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구성원 참여소통' 배점

- 개방이사 선임 시 구성원 대표단체 등에 추천권 부여 실적
- 총장 선임 관련 투명한 절차 운영 및 구성원 참여 수준 확대 정도
- 학내 구성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노력 등

간서명란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2023. 10. 10.	2023. 10. 10.	2023. 10. 10.	2023. 10. 10.	2023. 10. 10.	2023. 10. 10.

## 2) 운영 현황

- ① 학칙에 교수회 설치가 명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됨
- ② 교수회를 통한 대학과의 소통 창구 부재
- ③ 평가 우수 등급 대학(연세/중앙/계명/충남대 등) 대부분 교수회 설치·운영

## 3) 개선 방안

- ① 학칙에 근거, 교수회를 대학 공식 조직으로 편제에 반영
- ②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로 총장 선거, 대학운영에 참여

## 나. 주요 내용

1) 제65조 : 교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구체화, 교수회 근거 마련

2) 제66조 : 교수회 기능 정의

### ○ 권세혁 의장 입안부서 교무처 정규태 처장 설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다.

- 김인섭 의원 교수회에 관한 학칙이 통과되어야 교수회가 구성될 수 있고, 교수회가 구성되면 교수회 규정을 제정한 후 학칙에도 반영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정규태 처장 그렇다고 답하다.
- 권세혁 의장 교수회 운영비의 주체는 누구인지 질의하다.
- 정규태 처장 교수라고 답하다.
- 권세혁 의장 교수회 구성과 발족을 위해 학장협의회가 교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다.
- 정규태 처장 학장들이 준비위원들을 추천하면 교무처가 돋겠다고 답하다.
- 서대원 의원 현행은 제66조가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66조가 (기능)으로 바뀌어 4가지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심의와 제안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다. 또한 교협과 교총의 역할과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다.
- 정규태 처장 교협과 교총은 임의기구가 되어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며, 교수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하다. 심의와 제안의 책임성 차이가 있지만, 교수회가 제안을 하면 학교 행정부서에서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다.

## IV. 안건 심의결과

1안)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의하다(정성진 의원 동의, 정기철 의원 제청).

2안)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의하다(정기철 의원 동의, 백운섭 의원 제청).

3안)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의하다(김인섭 의원 동의, 박효균 의원 제청).

간서명란	정성진	정기철	백운섭	김인섭	박효균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 VI. 폐회선언

이상으로 제6차 대학평의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마치고 의장이 폐회 의결을 주문하자, 이종인 의원이 동의와 서대원 의원이 재청하므로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위 자문 및 심의 결과가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참여 의원 모두 서명 또는 날인과 간서명을 함

2022. 12. 29.

## 한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조광희 백운섭 이종인 정기철   
권세혁 정성진 김인섭 박효균   
서대원 정희현 물감 김도연 물감

의원 총 9인 참여